



공주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용자)



구분	내용
사업 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지원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모두 충족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지원분야 	경정분야 농지 구입, 하우스 등 시설 설치 및 구입, 묘목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축산분야 축사 부지 구입, 축산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등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지원형태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2%(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구분	내용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	대상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 귀농인이며,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부부가 둘 다 세대주일 경우 1명만 지원하나 사별·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연령기준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 귀농신고일 기준 지원액 300~700만원 / 가구당 내용 귀농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절차 귀농신고서 제출 (전입신고X) ▶ 장려금 신청 (귀농인) ▶ 현장 및 서류 확인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확정 (귀농지원위원회) ▶ 지원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2년경과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 귀농 귀촌인이며, 실거주하는 세대주 *부부가 둘 다 세대주일 경우 1명만 지원하나 사별·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연령기준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지원액 500만원 / 가구당 내용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지원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절차 사업 신청 (귀농귀촌인) ▶ 서류 제출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확정 (농업기술센터) ▶ 사업 추진 (귀농귀촌인) ▶ 완료 보고 (귀농귀촌인) ▶ 지원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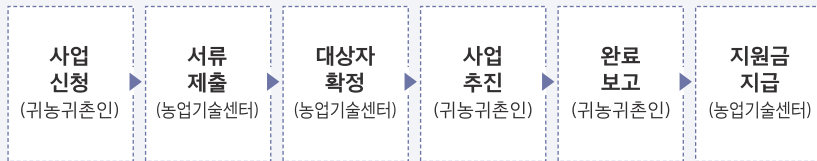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구분	내용
건축 설계비 지원사업	대상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1년 이내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 세대주 사업비 100만원 / 세대(예산 소진시까지) 내용 귀농귀촌인 주택, 농업시설(창고 등)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
집들이 지원사업	대상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1년 이내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 세대주 사업비 50만원 / 세대(예산 소진시까지) 내용 고맛나루장터 입점 품목 지원(물품 지원) -물품 당 3만원 이내로 한정, 1 방문세대 당 1 품목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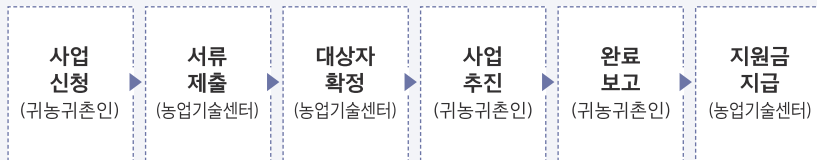
절차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

구분	내용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 내용 농촌(체험마을)에서 3~5개월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프로그램 체험

절차



귀농귀촌 지원정책



구분	내용
신규 농업인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내용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하면서 영농 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액 귀농인 80만원 / 월, 선도농가 40만원 / 월 지원기간 3~7개월 / 15개팀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	대상 농촌으로 이주한 5년이내 귀농인 사업비 개소당 10백만원 내용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및 기자재, 포장재, 브랜드 개발, 영농 신기술 농자재 등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대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이내의 만 40세미만 청장년층 귀농인 사업비 개소당 20백만원 내용 신규 청년층 영농기반시설 지원 -영농시설 및 기자재, 브랜드개발, 6차산업, 상품화, 저장시설 등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지방농촌진흥기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공주시 농촌 지역 전입일이 5년 이내인 농업인 사업비 23백만원 / 2개소 지원내용 귀농 후 창업 교육, 컨설팅, 창업 관련 사업 지원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대상 귀농·귀촌인 내용 -귀농귀촌인 농업기술, 농업경영, 마케팅, 농촌생활적응교육 등 -영농현장, 6차산업, 실습교육 등 다양한 현장 중심 교육추진 -향우회원 대상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위치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내(041-840-8848) 귀농상담 -귀농창업자금 융자 안내, 계획서 작성 등 -영농재배기술 및 농작물 선택 등 상담



구분	내용
귀농귀촌 협의회 육성	대상 공주시 귀농귀촌협의회 사업비 10백만원 내용 교육, 견학, 봉사활동 등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
귀농귀촌 국제농업 연찬	대상 공주시 귀농귀촌협의회 사업비 7백만원 내용 선진 농업 및 귀농귀촌 분야 등 벤치마킹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사업	사업비 4.25백만원(매년 사업비 다름) 내용 독거노인·취약계층 도배, 장판 교체 등 봉사활동

공주시 "귀농인의 집" 현황

귀농인의 집

사용료 15만원/월, 12개월간(대기자 없을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내용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거주지 제공

구분	관리자	위치	연락처	구조
1	신상국	정안면 관방삼밭실길 112-7 (전평리)	010-8505-1633	샌드위치패널 (방3, 89㎡)
2	김진만	탄천면 상수문길 79-3 (장선리)	010-6234-5546	고가합석 (방3, 66㎡)
3	소랭이 활성화 센터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396 (월산리)	010-5654-8250 (소랭이체험마을 사무장)	슬라브 (방2, 60㎡)

영농지원사업

구분	내용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88종 757대(본소 88종 406대, 남부 65종 217대, 북부 52종 134대) 임대료 8,000~157,000원(공주시민 30~50%감면) 임대방법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사전 전화 후 내방 임대료 감면 -지원조건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던 사람을 공주시로 전입 하도록 장려한 임대농업인 -지원내용 : 1명은 임대료 50% 감면, 2명이상은 전액 감면 *단, 연 50만원 한정 문의 기술보급과 041-840-8720 남부(이인) 041-840-8725 / 북부(신평) 041-840-2495
토양 검정실	대상 공주시민 누구나 문의 기술보급과 041-840-8718
유용 미생물 (EM)	대상 공주시민 누구나(수요일, 금요일) 문의 기술보급과 041-840-8922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 농업인단체지원 • 친환경농업지원 • 농어민수당 • 원예특작지원 • 스마트팜 • 농촌관광농원 ☎ 041-840-8660	 농식품유통과 • 유통, 품질인증 • 6차산업 • 고맛나루장터 • 푸드플랜업무 • 학교급식 ☎ 041-840-8670	 축산과 • 축산업지원 • 축산업등록 • 가축방역 • 축산물유통 • 양봉 ☎ 041-840-8875	 농촌진흥과 • 시민대학 • 청년창업농 • 4-H • 농촌체험 • 귀농귀촌사업 ☎ 041-840-8680	 기술보급과 • 식량,특작상담 • 원예·과수 상담 • 농산물종합가공실 • 농기계임대 • 토양검정실 • 유용미생물 ☎ 041-840-8715
---	---	---	--	---

귀농귀촌의 이해

귀농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귀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귀농사업 대상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문경시에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단독세대 포함)

도시지역 이란

읍·면 이외의 지역

연령제한

지원사업별 상이함

전입기한

보조사업 : 5년 이내
융자사업 : 5년 이내

교육이수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영농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한 자

*온라인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농촌지역 : 읍·면의 지역 /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귀농귀촌 준비 절차

준비절차 단계

STEP 1	귀농결심 사전 농업관련기관, 귀농 경험자를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농체험 소규모 영농으로 텃밭재배나 주말농장 운영을 통하여 미리 체험 귀농계획에 참고한다.
STEP 2	가족합의 부부 등 배우자의 참여가 귀농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 후 합의해야한다.
STEP 3	작목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STEP 4	영농기술 습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STEP 5	정착지 물색 자녀교육, 생활여건과 선정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여 결정한다.
STEP 6	주택 및 농지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곳을 골라 비교해보고 선택한다.
STEP 7	영농계획 수립 농산물 생산에서 수익까지는 최소 4개월에서 4~6년이 걸리므로 치밀하게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

귀농 전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 ☒ 귀농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 ☒ 가족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동의 있었는가?
- ☒ 최소 1~3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였는가?
- ☒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 ☒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 ☒ 공주시 기후, 특성, 농촌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귀농귀촌 피해사례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유형



기획부동산형 | 싼 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영농조합법인형 |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재료 제공,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묘목상형 |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



애견브리딩형 | 애견 브리딩·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시설·사료 등 판매



곤충산업형 |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피해 예방 방안

1



원금 보장·고수익 사업, 정부기관 사칭, 귀농자금 대출 유도 등 광고를 조심하세요!

2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견적 등을 비교해보고,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에 상담·컨설팅을 받으세요

3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 후 대출 신청하세요!

농막관련 문의사항



농지이용행위 문의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041-840-844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문의

강북지역 :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8454

강남지역 : 허가건축과 건축2팀 041-840-8441



오수처리시설 문의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041-840-8621

농막 관련 설치절차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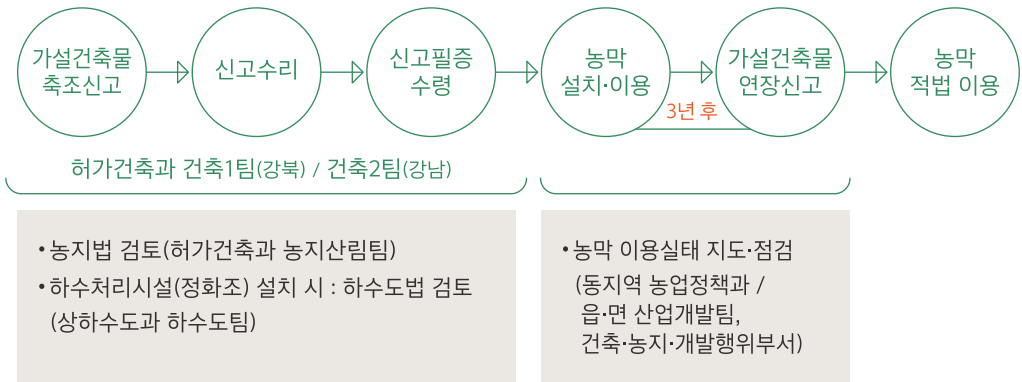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법적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

「농지법」에서 농막을 농지이용 범위에 포함

농막 관리흐름도



상세 위반여부 판단

- 농지법 상 농막 내 정화조(오수관로 등) 및 화장실 설치 가능. 단, 합산면적20㎡ 초과 불가
- 농막 구조 별도 규정없음
*농지법 상 별도의 높이제한 없으나, 2층구조는 입법취지 상 타당하지 않음
- 농막 설치 가능 개수 별도 규정 없음
*해당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연접된 필지의 경우에도 집중하여 설치하는 것은 제한됨)
- 농지법 상 농막을 설치할 때 그 밑을 포장할 수 없음
- 농지전용대상 아니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농막 신청 가능
- 전입신고 불가 및 주거목적 사용여부는 사후관리로 검증
- 농막은 상시·일시 거주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농지법 제34조 위반
- 농막은 임차인도 설치가능,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할 때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 한 필지에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각각 설치 가능
*하나의 시설로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설치 불가
-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라면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간 임대차 불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시정)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음

공주시 활용정보&유관기관

부서	업무	연락처
허가 건축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가주택), 도시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041-840-8436
	농지·산림 전용 허가	041-840-8440
세무과	취득세, 세무관련 업무	041-840-8335
환경보호과	야생동물, 철망울타리	041-840-8499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내용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041-840-2581
기관	업무	연락처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교육 및 지역정보안내	1899-9097
에그릭스(agrix)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1588-6830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어촌통합정보	1577-7770 (041)850-6400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1644-8778 (041)853-6060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지원	1355 (041)850-38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 지원	1544-1000
농사로농업기술포털	농사에 관한 모든 정보	1544-8572
농지114	농지·산지 정복의 내비게이션	(032)583-7277
휴토람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토양환경지도	1544-2472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및 교육 정보	1600-3248
중부지방 산림청	임야 농업경영체등록	(041)850-4055
공주시산림조합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041)881-4512